

#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6일  
자치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31일 포항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6월 4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

•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(2024. 6. 26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안나경 평생교육과장)

가. 개정이유

○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·운영 의무화 등 「평생교육법」이 개정(2023.4.18. 개정, 2024.4.19. 시행)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3조제3항)

○ 경비보조 및 지원 대상 정비(안 제4조)

○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구성 중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추가(안 제7조)

○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명칭 정비(안 제12조)

- (현행) 평생교육 실무조정위원회 → (개정) 평생교육실무협의회

○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16조)

○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신설(안 제19조)

○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규정 통일(안 제20조)

-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및 마을평생교육 용어 정비(안 제22조 ~ 제24조)
  - (현행) 마을평생교육지도자 → (개정) 평생교육지도자
  - (현행) 마을평생교육 → (개정) 평생교육

#### 다. 관계법령

- 「평생교육법」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근거 마련 및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우리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·다문화·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운영 기준 마련과,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을 반영하여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시민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## 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포항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2조를 삭제하고,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3조) 본문 중 “**협의회 및 실무협의회**” 를 “**협의회**” 로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4조) 중 “**협의회 및 실무협의회**” 를 “**협의회**” 로 한다.

제15조 앞에 “**제3장 평생학습관 등**” 을 삭제한다.

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3장 평생학습관 등

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.

제22조 앞에 “**제4장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**” 를 삭제한다.

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4장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

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.

제25조 앞에 “**제5장 보칙**” 을 삭제한다.

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5장 보칙

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.
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1항은 “**평생교육협의회, 평생교육실무협의회**” 를 “**평생교육협의회**” 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<u>제12조(평생교육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는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.</u></p> <p><u>1. 협의회의 심의 및 지원</u></p> <p><u>2.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·단체 간의 실무협의·조정 및 정보교류</u></p> <p><u>3. 평생교육 관련 시 단위 규모 이상 행사의 개최 및 참가 또는 유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·평가 등에 대한 지원</u></p> <p><u>4.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, 학술대회 등의 지원</u></p> <p><u>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
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시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

2. 시 소재 평생교육기관·단체·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학계의 평생교육 전문가

4. 평생교육사 자격을 소지하고 지역의 평생교육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

⑥ 실무협회의 운영은 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시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4조(준용) 협의회 및 실무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3장 평생학습관 등

제12조(수당 등) ----- 협의회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13조(준용) 협의회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<삭 제>

<신 설>

제15조 ~ 제21조 (생 략)

제4장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

<신 설>

제22조 ~ 제24조 (생 략)

제5장 보칙

<신 설>

제25조 · 제26조 (생 략)

부 칙 부칙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 
중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포항시  
평생교육협의회, 평생교육실무협의  
회 및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이  
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② (생 략)

제3장 평생학습관 등

제14조 ~ 제20조 (현행 제15조부터  
제21조까지와 같음)

<삭 제>

제4장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

제21조 ~ 제23조 (현행 제22조부터  
제24조까지와 같음)

<삭 제>

제5장 보칙

제24조 · 제25조 (현행 제25조 및 제26  
조와 같음)

부 칙 부칙

제2조(경과조치) -----  
-----  
평생교육협의회 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